

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

의 안 번 호	제49호
--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03. 3. 18
발 의 자 : 신영균의원외 2인

□ 제안이유

- “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”의 구성인원과 위원의 임기, 심사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구성인원을 7명 이내로 함
(안 제4조 제2항)
-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토록 함(안 제4조 제2항)
-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도록 함
(안 제4조 제3항)
- 공무국외여행심사를 아니할 수 있는 범위를 “6명”에서 “7명”으로 조정함 (안 제4조 제5항)

□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37조의2(의회규칙)

예산군의회 규칙 제 호

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

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제3항의 “6인”을 “7인”으로 하고, 같은조 “제2항 내지 제3항”을 “제4항 내지 제5항”으로 하며, 같은조 제1항 다음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,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신구조문대비표】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심사위원회 설치) ①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소속 의원 및 대학교수,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(신설)</p>	<p>제4조①(현행과 같음)</p>
<p>②심사위원회는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.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.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	<p>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④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
<p>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안에서 6인 이하의 의원이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	<p>⑤----- -----7인----- ----- -----</p>